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5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나.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56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다.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57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58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마.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59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바.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60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61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아.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 2462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2. 제안이유

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2025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라.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마.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바.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아.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광진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추진 필요성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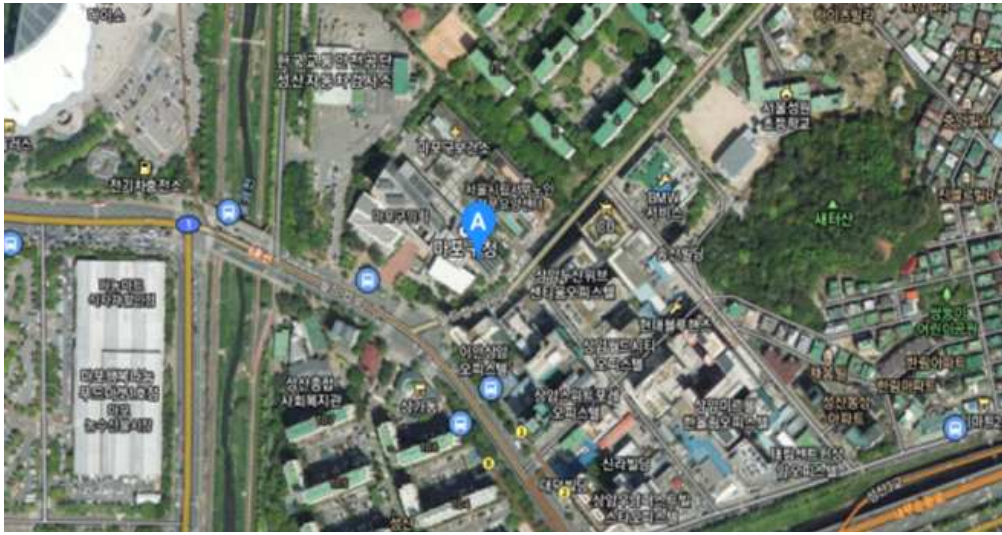
3) 위탁 사무 내용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2㎡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위치도



※ 5개분소 : 강서·강북·광진분소('25.7.1.), 보라매·창동분소('26.7.1.)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07백만원('25년)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3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2,350백만원, 운영비 158백만원, 사업비 799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나.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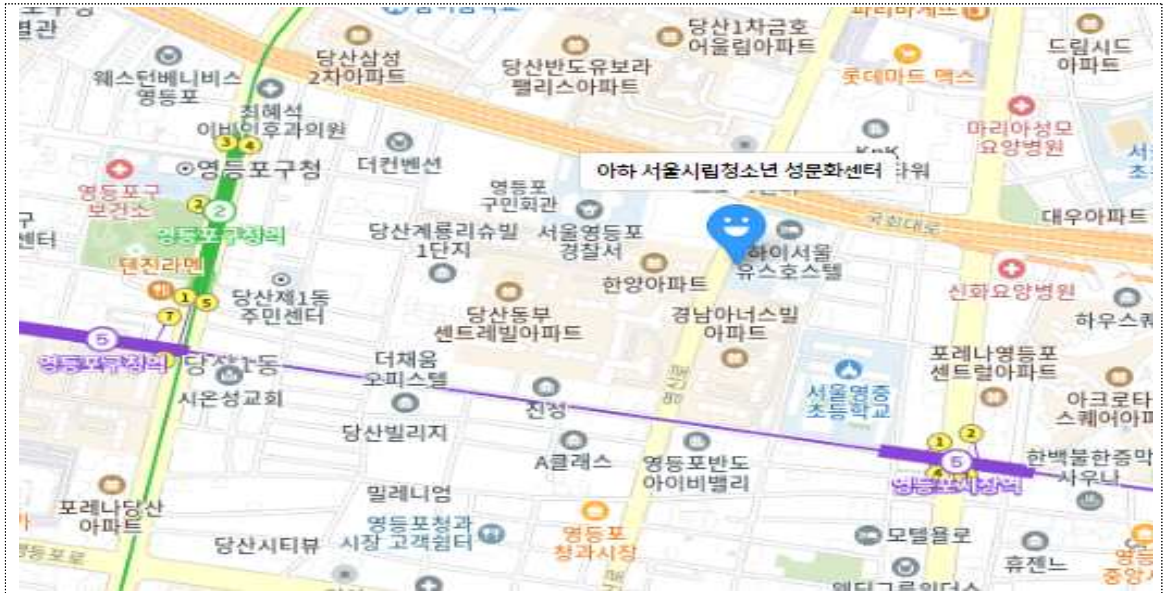
3) 위탁 사무 내용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 6개분소 : 은평·광진·동작·드림분소('25.7.1.), 창동분소('26.7.1), 성북분소('27.7.1)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다.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개인·전화·사이버·집단상담 등 상담사업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 부모·지역센터 등 상담자 교육사업

○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97. 9. 19.

○ 시설규모 : 1,516㎡(지상 6층·7층)

- 이용대상 : 청소년(만9세~24세)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44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0백만원, 운영비 149백만원, 사업비 1,680백만원, 사업외지출 77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라.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 공간과 전세계 여행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 여행청소년에게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국내·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보호사업
-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

4)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
- 제3자 재위탁 중(예정)인 사무 : 2건
 -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현 계약기간 : 2023.7.1.~2025.6.30.)

5)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2011. 3. 28.
- 시설규모 : 부지 1,597㎡ / 건물 9,807㎡
- 주요시설 : 객실(95실), 회의실(6실), 편의시설(요리실, 카페, 레스토랑, 세탁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6)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7) 수탁자 선정방식 :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60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530백만원, 운영비 1,861백만원, 사업비 338백만원, 사업 외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

9)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마.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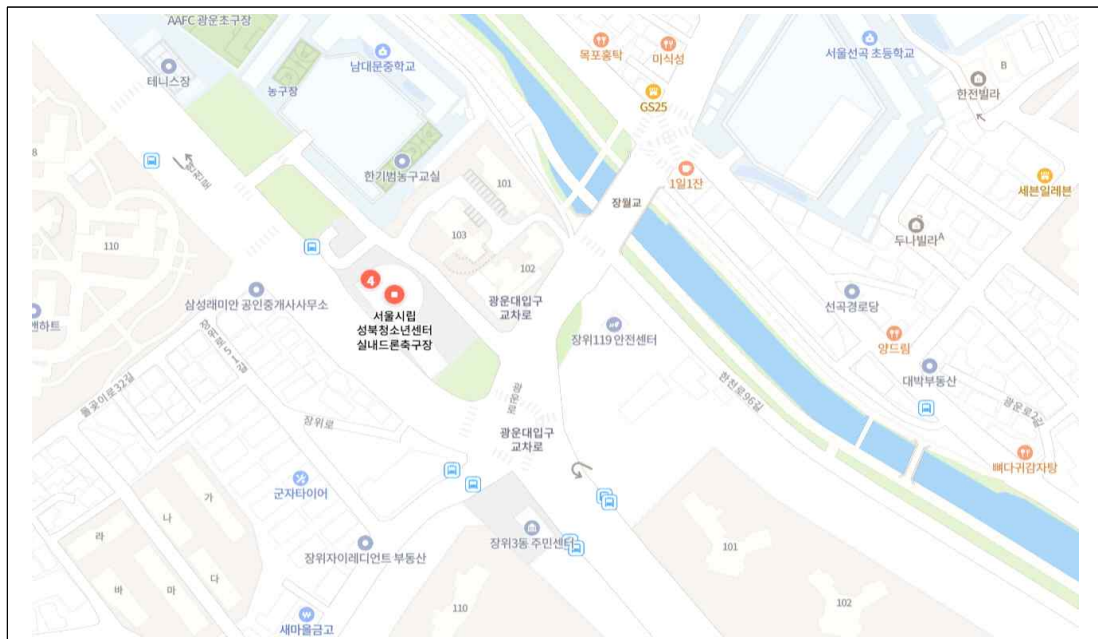
-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 9. 1.
- 시설규모 : 부지 2,679m² / 건물 5,726m²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93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바.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 11. 11.
- 시설규모 : 부지 985㎡ / 건물 6,911㎡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개관일자 : 2005. 6. 1.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827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아.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사무명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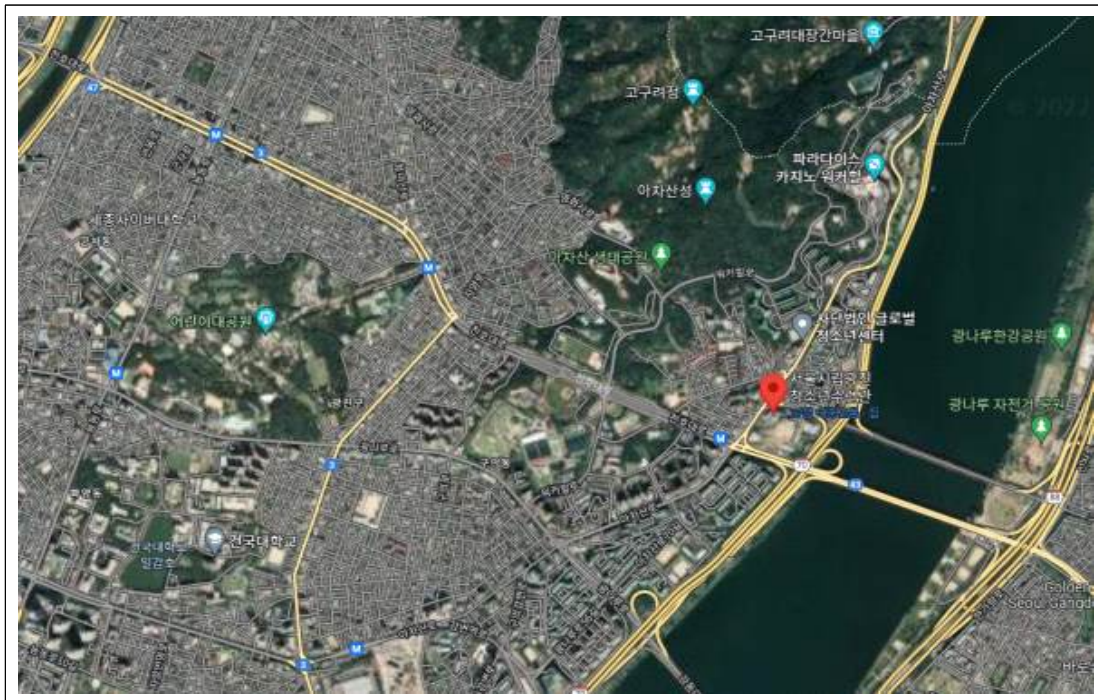
- 시립광진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
- 개관일자 : 2006. 6. 8.
- 시설규모 : 부지 2,081 m^2 / 건물 5,632 m^2
- 주요시설 : 대극장, 천문특화시설(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등), 강의실, 청소년 전용공간, 다목적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8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71백만원, 운영비 446백만원, 사업비 1,394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7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2)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4)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5)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6)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7)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8)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6·8·11조

5. 검토 의견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8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였음.
- 계약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신규위탁 2건(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 재위탁 6건(상담복지센터, 서울·광진·성북·서대문 청소년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고,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소년시설조례」)에서 규정한 시설 분류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 5개소(서울·광진·성북·서대문 청소년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청소년복지시설 1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청소년시설 2개소(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이며,
 - 민간위탁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예산지원형(서울·광진·성북·서대문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은 7개소, 자립형 1개소(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 총 8건이며, 동의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제328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2455	시립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	신규위탁 기타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개관일자 : - 시설규모 : 면적 200.52㎡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위탁(공모) - 소요예산 : 3,307백만원(대표 1개소, 분소 3개소)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2456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신규위탁 기타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 시설규모 : 684.07m²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위탁(공모) - 소요예산 : 2,013백만원(대표 1개소, 분소 4개소)
2457	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복지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97.9.19. - 시설규모 : 1,516m²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4,044백만원
2458	시립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재위탁 활동시설 자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개관일자 : 2011.3.28. - 시설규모 : 부지 1,597m², 건물 9,807m²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4,160백만원
2459	시립성북 청소년센터	재위탁 활동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9.1. - 시설규모 : 부지 2,679m², 건물 5,726m²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4,193백만원
2460	시립서울 청소년센터	재위탁 활동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11.11. - 시설규모 : 부지 985m², 건물 6,911m²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2,940백만원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2461	시립서대문 청소년센터	재위탁 활동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개관일자 : 2005.6.1. - 시설규모 : 부지 6,257㎡, 건물 5,470㎡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4,827백만원
2462	시립광진 청소년센터	재위탁 활동시설 예산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2 - 개관일자 : 2006.6.8. - 시설규모 : 부지 2,081㎡, 건물 5,632㎡ - 민간위탁기간 :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소요예산 : 3,008백만원

나. 민간위탁 동의안의 공통 사항

1) 민간위탁 성질 (권한과 책임의 이전)

- 금번 제출된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시장 사무)이나, 운영의 효율성, 사무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의 이전이라는 점, 권한과 책임의 이전의 대상이 민간(법인, 단체, 개인 등)이라는 특징에 따라 평생교육국은 「지방자치법」(제 117조)과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 민간위탁은 시장(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잘못된 권한과 책임의 위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 등)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하고 있음.

- 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방식은 사무의 특징, 수입·수탁기관의 종류, 책임 소재 등에 따라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등으로 구분되며,
 - 권한과 책임을 이전할 사무는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등의 사무로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청소년 지도·육성이라는 분야의 전문성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는 점, 이전할 대상이 민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가) 기본검토 사항

- 「민간위탁조례」는 시장의 무분별한 권한과 책임의 이전을 막기 위해 3개 조항(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을 두고,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조항(제5조~제9조)을 규정하고, 권한과 책임 및 감독 등의 규정(10개 조항, 제10조~제19조)을 두고 있음.
- 특히,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은 부적정한 권한과 책임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상황(또는 기 동의 사항)이더라도 재위탁을 추진할 때마다 의회의 심의·동의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의회는 필요성·적정성·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제328회 임시회에 제출된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① 대상 사무(위탁사무), ② 대상 기관(수탁기관), ③ 권한과 책임의 이양 기간(위탁기간) 적정성 등에 대해 원점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재위탁·재계약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 이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 이전 -수임기관명의로 권한과 책임 행사 -위임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 이전 -수탁기관명의로 권한과 책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 이전 -수탁기관명의로 권한과 책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대행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음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하급행정기관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지자체장→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받지않는 하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타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다른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 계측·검측·검사 등행정조사관련 분야 에서 널리 사용, 사용료·요금 등의 부과·징수에서 활용
지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은 대행기관에 대해 지도·감독권 행사
사전승인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17조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임규정 • 사무위임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17조② 및 제16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17조③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책임성 약화, 위탁기관의 이익 우선, 낮은 지도·감독의 수준, 감독의 어려움, 장기위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검토할 사항(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해당 분야의 민간경쟁 존재 여부 등)을 규정하고, 사전검토를 시장의 의무(강행규정)로 부과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은 다양한 문제(특정단체의 독점·장기위탁, 종속화, 낮은 효율성, 개선 없는 프로그램, 사업성과 하락, 민간의 경쟁부족, 낮은 수준의 관리·감독권, 수익사업 우선 추진 등)를 내포하고 있어,

- 민간위탁의 기본사항(「민간위탁조례」 제4조의4에서 규정한 내용, 민간 위탁 추진의 필요성, 위탁사무, 위탁기간, 선정방식, 소요예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위탁사무의 공공성 유지, 전문성 지속 제고, 안정성, 효율성, 선정의 공정성, 민간 단체가 경쟁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민간위탁의 필요충분 조건 : 경쟁

- 민간위탁은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민간기관의 고품질·저비용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장점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의 효과, 행정조직 비대화 억제, 능률성 제고, 비용 절감 등이 있으나, 경쟁이 없는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고비용·저성과 초래, 독점(장기위탁, 다수 위탁, 진입장벽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위탁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단체 등에게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만 효과성(고비용·저효율 해소)이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경쟁의 존재 여부 및 경쟁의 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쟁의 존재 여부 및 경쟁의 강도 확인 방법 → 산업구조 분석 모델

- 특정 분야에 경쟁의 존재 여부 및 경쟁의 강도를 추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나, 이중 ① **시장의 진입장벽**, ② **산업 성장률**(낮을수록 경쟁 치열), ③ **고정비 비중**(고정비 높을수록 치열), ④ **대체품의 존재**(대체품이 가격과 효능이 좋을수록 치열), ⑤ **서비스 이용자의 교섭력**(이용자가 많을수록, 차별화가 클수록 치열) 등이 공통적인 요소('산업구조 분석모델' 중 '경쟁강도와 경쟁요인의 파악' 발췌 후 요약)로 꼽히고 있음.

※ 서울시 청소년 분야의 경쟁 → 없거나 낮은 수준의 경쟁 존재

- 활동·보호·복지 등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단체'로, 서울시는 '과거 실적'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고, 시설운영 및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높고,
-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적어 '소비자로서의 교섭력'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에서 장기위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민간단체의 경쟁 여부 및 경쟁의 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경쟁유무, 경쟁의 강도 또는 고품질·저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 또는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라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이 없다”로 나타나고 있는바, 공익성·책임성을 강조하여 ‘공공위탁’ 또는 ‘용역을 활용한 직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 사회의 여건(청소년 인구 감소, 개인화, 온·오프라인이 혼합된 생활양식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시설을 일률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청소년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 시설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고시(2005.4.8.)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또한, 선정기준이 평생교육국의 의도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평생교육국은 정량적 평가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에 필요한 법정 최소 기준인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등의 보유 여부’,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 등으로 전문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탁법인은 시설 종사자를 80% 이상을 고용 승계 의무에 따라 평생교육국이 내세운 기준으로는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정성적 평가에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 누락된 사업계획과 경영능력 등에 배점이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 분야에 한정된 저비용·고효율 공공서비스 전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수탁기관 선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가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성희롱, 인권, 청렴, 투명회계, 중대재해예방, 고용안정, 육아지원 등) 사항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행정청 부담 경감 또는 행정편의 등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관련 심사 기준 >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6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5	5
	신인도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5
	전문인력 보유상태 (5)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5
	안전보건확보 (4)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4	4
	감점 (0 ~ -4)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 획득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원스트라이트 이웃) 발생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1 -1 -1 -1	-4
정성적	사업이해도	◦ 사업이해 및 의지	5	5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평가 (70)	(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30	30
	법인의 경영능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5	
	안전보건확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3	3
	법인 도덕성·책임성(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7	7
	종사자 고용안정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6	6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 관련 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4	4
	감 점 (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위반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공고일 기준 중복 수탁현황 	-0.4		
계			100	

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나) 재구조화 추진 기관 관련 동의안 공통 검토

-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분야별로 특화되고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본 재구조화의 목적 중 하나가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이라는 측면,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생할 때마다 특화 또는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 후 시급성·중요성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청소년 시설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재구조화에 대한 청소년시설 내부의 의견은 다양한 예시(사이버폭력, 다편이크 등)를 들며 전문기관 유지의 필요성을 제출(기관→평생교육국)하였음.

〈 시립청소년시설 연대별 설치 현황 〉

(단위:개소)

구분		연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총계	59		4	9	24	20	2
활동 시설 (30)	청소년센터(21)		4	3	13	1	-
	청소년특화시설(7)			2 미래진로·활동	2 미디어· 문화교류	2 노원미래· 드림	1 음악
	유스호스텔(2)				1 서울	1 하이서울	
복지 시설 (15)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14)			2	3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1)			1			
기타 시설 (14)	성문화센터(7)			1 아하	2 창동·광진	3 드림·성북·동작	1 은평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				2 광진·보라매	4 마포·창동· 강북·강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				1		

- 재구조화 대상인 청소년시설은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의무적인 사항(회계의 투명성, 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나, 시설의 유지 필요성,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효과성 등에 대해 정기적·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소년 상담분야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화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 종합병원과 같은 통합상담시설을 운영하여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TF팀 또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되는바, 성상담, 인터넷 역기능 상담, 마약상담, 폭력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을 구상·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시설 과다’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외형은 아이월센터(7개 → 1개)와 성문화센터(6개 → 1개)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력과 조직은 감소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과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바,
 -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직축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성토·불만 등은 줄이고, 외견상 조직축소 효과만을 위해 본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효과성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재구조화의 목적이 조직의 축소 또는 기능의 강화가 아닌, 행정편의(민간위탁 관리·감독 등의 업무 감소 등) 또는 과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과 평가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통폐합하는 것은 아닌지 통폐합의 원인과 과정,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 2024년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본 재구조화에 대해 ① 센터 개수 과다, ② 권역별 설치 필요성 의문, ③ 청소년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등으로 기능 통폐합 등의 이유로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바 있고,
 - 평생교육국은 조건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청소년성문화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 보완 계획, 2024.7.30., 청소년정책과-14005)을 수립 후 2025년 같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적정(권고)’의 결과를 받았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적정’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의 내용이 평생교육국의 주관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과 함께 동 위원회 권고 사항의 해소 여부에 대한 확인 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전체 센터 개수 과다 및 권역별 설치 필요성 의문, 권역별 재편 혹은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기능 통폐합 방안 마련

□ **보완계획**

- 권역별 재편 혹은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기능 통폐합 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 용역 실시 및 시설 재구조화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음(9월중)

〈 2025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현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 결과	의견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	사설형	신규 (통합)	(학)강서대학교 외 4개	3년 이내 (25.7.1.~28.6.30.)	적정 (권고)	[권고] - 사업목적 명확화, 사업계획 구체화할 것 - 분소가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사설형	신규 (통합)	(사)흥사단 외 5개	3년 이내 (25.7.1.~28.6.30.)	적정 (권고)	

〈 본 동의안의 적시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출처 : 의안번호 2455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중 3p 발췌

다. 동의안별 세부검토

1)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별칭 I will center, 아이윌센터)의 업무의 체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구조화(1센터-5분소)하여 2025년 7월부터 3년간(2025.7.1.~2028.6.30.) 민간에 신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1층
- **시설규모** : 200.52㎡
- **주요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 (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 (**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 종합·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 **소요예산** : 3,307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350백만원, 운영비 158백만원, 사업비 799백만원
 -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3개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하 '아이월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국은 공공서비스의 전달,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조직의 체계화·전문화 등을 위해 각 센터를 통합하는 한편, 본 시설의 운영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이월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예방·홍보·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및 청소년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황 〉

(단위:명, m², 천원)

기관명	소재지	규 모		민간위탁금	수탁법인
		직원	면적		
광진	광진구 구천면로 2 광진청소년센터 내	10명	234m ²	729,524	사)흥사단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보라매청소년센터 내	10명	203.3m ²	705,607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청소년센터 내	10명	200.5m ²	767,444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창동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청소년센터 내	10명	191.21m ²	777,770	학)삼육학원삼육대학교
강북	중구 충무로4가 334번지 2층 201, 203호	10명	288.43m ²	761,156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강서사무소	강서구 우장산로 117	10명	274.17m ²	686,576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을 반복 설치하고, 시설의 종류별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설치했던 과다 설치의 문제를 해소하고,
 - 각 시설마다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차별·특화 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서비스 일관성·균일성 등을 위해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현재 운영 중인 총 6개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잔존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2년에 걸쳐 순차적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구조화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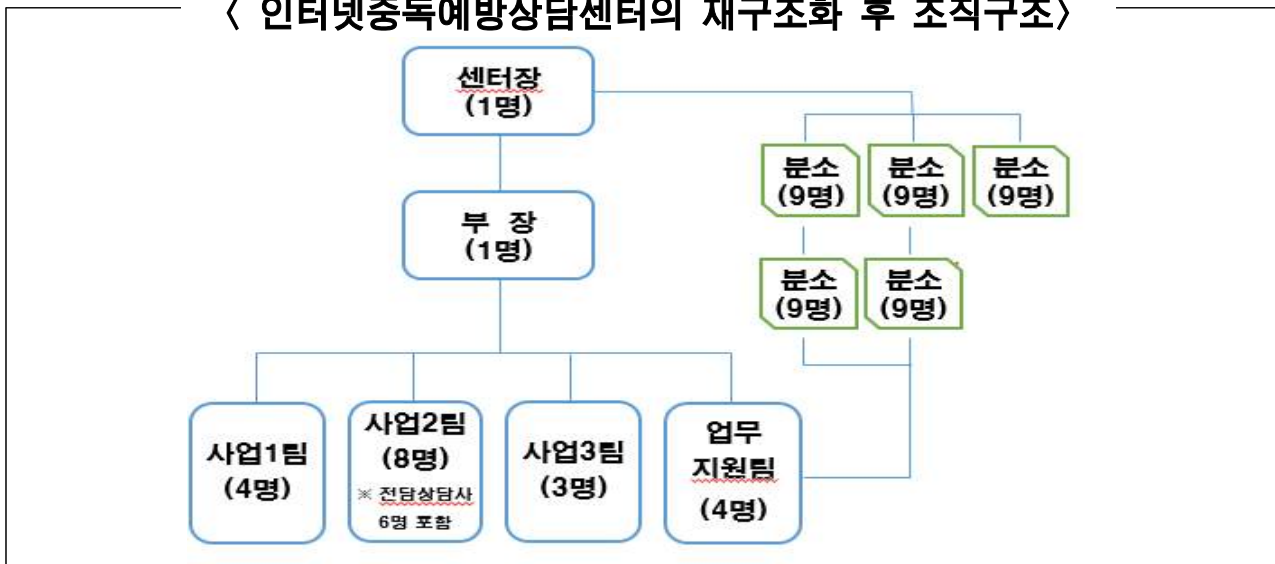
(단위:명, m², 천원)

기관명	소재지	규모		민간위탁금	수탁법인
		직원	면적		
광진	광진구 구천면로 2 광진청소년센터 내	10명	234m ²	729,524	사)흥사단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보라매청소년센터 내	10명	203.3m ²	705,607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청소년센터 내	10명	200.5m ²	767,444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창동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청소년센터 내	10명	191.21m ²	777,770	학)삼육학원삼육대학교
강북	중구 충무로4가 334번지 2층 201, 203호	10명	288.43m ²	761,156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강서사무소	강서구 우장산로 117	10명	274.17m ²	686,576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구조화 일정 〉

구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5년 7월	(대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분소3) 강서, 광진, 강북
2026년 7월	(대표1)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분소5) 강서, 광진, 강북, 보라매, 창동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재구조화 후 조직구조 〉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황 〉

(단위:명, ()는 1개분소 인원)

기관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총계	66	1	0	6	2	12	34	8
대표	21	1		1	2	2	12	3
분소(5개)	45(9)			5(1)		10(2)	25(5)	5(1)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0명, 전담상담사 6명(대표센터 배치) 등 총 66명

- 아이월센터 6개소 중 4개소(광진, 보라매, 마포, 창동)는 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3개소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아이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강북아이월센터는 강북청소년센터와 장소는 다르나 같은 수탁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각 시설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 내 인사발령(아이월센터↔청소년수련관)이 있었으나, 평생교육국은 고용승계 기준(80% 이상) 적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바, 전문성 제고, 행정 효율화 등 시설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 현황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센터		
기관명	소재지	수탁법인	수탁법인	소재지	기관명
광진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흥사단	사)흥사단	광진구 구천면로 2	광진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61	보라매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 212	사)한국청소년 지원네트워크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
창동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학)삼육학원 삼육대학교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
강북	중구 총무로4가 334번지 2층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강북구 4.19로 74	강북
강서사무소	강서구 우장산로 117	사)한국청소년 지원네트워크			

- 평생교육국은 2018년(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원스톱서비스)부터 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센터의 건물 내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때, 시설 간 연계·협조를 고려하여 청소년 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공공서비스의 균일성 회복 또는 아이월센터 내의 체계 등만을 고려하여 아이월센터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과의 연계 여부와 함께 본 개편이 행정편의적인 것은 아닌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대표센터는 마포, 분소는 도봉·광진·‘동작 또는 강서’로 운영할 예정이나, 아이월센터에 대한 지역 형평성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소를 그대로 분소로 이용하여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성 강화 보다는 직원들의 출장교육 거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 접근성을 위한 배치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이월센터의 주요 기능은 예방교육과 상담 등으로, 예방교육은 청소년 센터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나, 상담의 경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군을 교육청으로부터 연계받아 아이월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 인터넷 역기능 관련 고위험군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부모 없이 홀로 방치된 아이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분소로 적절한 상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사업 형태

- 아이월센터의 사업은 학교·기관을 방문하는 사업 50%, 센터내방 29%, 전화·온라인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권역화하여 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분소를 운영할 예정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사업이 대부분이 전화·온라인 또는 방문교육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방문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들의 출장 거리만을 염두하여 불균형한 배치를 고수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4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사업성과 〉

시 설 명	청소년인구	이용인원	대 면				비대면			
			학교.기관 방문		센터내방		전 화		온라인	
평 균	222,945	82,730(100%)	41,063(50%)		24,231(29%)		7,318(9%)		10,118(12%)	
유 형	-	-	교육	상담	교육	상담	교육	상담	교육	상담
광 진	306,847	70,364	46,996	1,687	3,411	11,040	-	6,992	86	152
보라매	255,421	85,409	38,553	4,577	11,619	22,638	-	7,771	-	251
마 포	205,003	93,211	29,195	2,626	11,451	12,234	-	7,276	30,404	25
창 동	167,189	83,298	39,915	3,965	5,799	15,520	-	7,497	10,591	11
강 북	205,780	94,972	34,590	2,690	2,464	29,025	-	7,174	19,029	-
강 서	197,427	69,123	36,840	4,743	8,018	12,166	-	7,199	-	157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재구조화 후 분소배치 계획 〉

구 분	인터넷센터(6센터→ 1센터, 3분소)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동 북 권	· 창 동 ⇒ 동북분소	
동 남 권	· 광 진 ⇒ 동남분소	
서 북 권	· 마 포 ⇒ 대표, 서북권 관할 · 강 북 (운영종료)	
서 남 권	· 보라매, 강서 중 1개소 ⇒ 서남분소	

- 아이월센터의 통합은 타 청소년시설의 기능과도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인터넷 역기능(과의존,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해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아이월센터가 함께 대응해 왔으나, 아이월센터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따른 조직정비(청소년미디어센터 내 미디어보호팀을 아이월센터로 이관) 외 다른 사항(시설별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개편 후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능 중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은 아이월센터의 ‘예방교육’과 유사한 역할로 보이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복성이 남아 있는바, 아이월센터의 재구조화가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부터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7개소를 행정기능 통합 및 상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통폐합하여, 대표센터를 중심으로 분소를 운영하는 체제로 재구조화 후 이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2025.7.1.~2028.6.30.) 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시설규모** : 684.07㎡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면접상담실, 사무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신규위탁)
 - 신규위탁 사유 : 종합·총괄 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 ※ 2025년 추진 : 대표센터 1, 분소 4개소
- **소요예산** : 2,013백만원(2025년, 국비 435백만원, 시비 1,578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1,779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사업비 1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성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 바른 성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로, 7개 센터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던 성 관련 교육을 일원화하여 서비스 균일화 및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재구조화 또는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성문화센터별 ‘사춘기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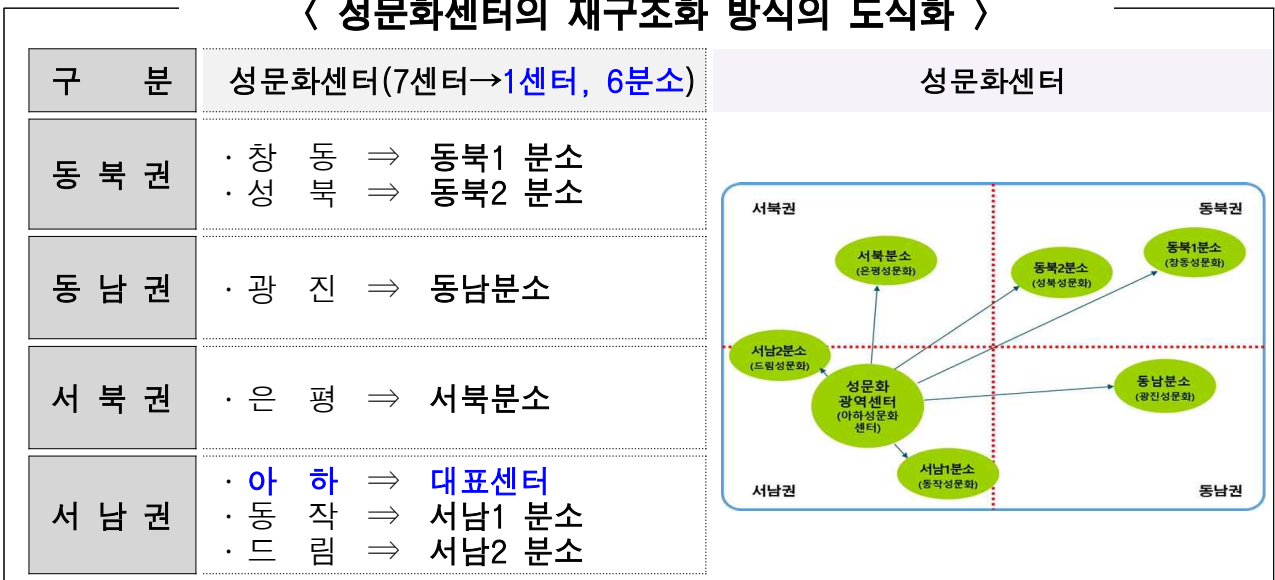
시 설 명	대 상	주요 내용	활 동	시 간
아 하	초4~6학년	성기 명칭, 몸의 변화, 월경, 탄생	단어퀴즈 / 영상보기	80분
광 진	초4~6학년	사춘기 개념	OX퀴즈	60분
창 동	초4~6학년	사춘기 개념(위생, 속옷, 자위, 생리 등)	마인드맵 / 고민 적기	40분
드 림	초5~6학년	월경 알기, 월경용품 알기	월경용품 사용법	40분

- 평생교육국은 시설별 잔존 민간위탁기간을 고려하여 연차별 통폐합 계획을 수립(‘2025년 1센터 4분소’→‘2026년 1센터 5분소’→‘2027년 1센터 6분소’)하고, 인력·예산·조직을 일원화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하며, 센터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을 대표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균일한 교육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 후 조직구조 〉



〈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 방식의 도식화 〉



- 성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성 관련 바른 지식·정보 제공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방 및 안전 등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집단교육을 위주로, 중·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개별·맞춤형 성 상담 위주로 접근해야 할 것이나,
 - 성문화센터의 업무 비중은 대부분 학교를 방문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성교육이며, 센터를 내방하여 받는 개별 또는 소그룹 성교육·성상담은 적은 비중으로 나타나는바,
 - 성문화센터의 역할이 초기 및 중·후기 청소년들에게 균형있는 성교육과 성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재편되는지 여부, 실제 성문제를 겪고 있는 중·후기 청소년에게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24년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시설 〉

(단위: 건, 명)

구분	계		교육인원		상담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체험관 교육상담	4,871	27,827	2,515	25,471	2,356	2,356
찾아가는 교육상담	7,806	159,172	7,702	159,068	104	104

- 또한, 성문화센터가 재구조화를 통해 성교육의 주체를 명확화하고, 성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학교에서는 성교육 강사의 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부모들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성교육에 대해 불안감, 미흡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어, ‘청소년 성교육’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성교육의 주체는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성교육의 주체는 전문 성교육 강사를 섭외하는 선생님이 성교육의 주체가 되며,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부모가 ‘청소년 성교육’의 주체(소비자, 사교육 구매자)가 되고 있는바,
 - 성문화센터가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불안감, 미흡함 등”을 해소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 가능한지와 실현 방법(정책과 사업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전 청소년 성교육·성문화 등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성문화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여부 및 민간의 성교육 방식에 앞서 바른 성교육 문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 성교육’ 분야가 상업적으로 ‘시장화’된 여건 속에서 성문화센터의 ‘성문화 선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재까지 학교 및 서울시는 ‘보호와 통제’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성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민간의 일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청소년을 학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 성적 영역에서도 자유로운 개인 등으로 간주하며, 인식의 재생산을 거쳐 십대 청소년도 ‘사회적으로 성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있음.
 - 청소년의 성 보호에 중점이 있는 ‘보호주의 성교육’과 청소년의 (성적)표현에 방점이 있는 ‘자유주의 성교육’ 등이 경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각각 발전하고 있는 성교육 시장에서 평생교육국은 성문화센터의 운영 방향을 확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시장의 '고객 요구 맞춤형 성교육'에 앞서서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대안은 도출했는지 여부, 청소년 성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보호주의 vs 자유주의, 성교육의 주체 왜곡, 성교육 상업화에 따른 문제 등)를 해소할 수 있는 재구조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성교육 시장의 다양한 방향성

- '남자 청소년을 억울한 피해자'로 확정하고, 대응법을 가르치는 성교육
 - '맞춤형 성교육'으로 가장하여 성교육의 구매자(학부모)의 기호에 맞게 '특정 성별 우월주의 성교육'
 - 구매자의 자녀 성별에 따라 피임에 방점을 맞춘 성교육
- 청소년의 성교육·성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문화 센터의 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더해 신속행정, 공공서비스의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재구조화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 재구조화의 목적이 사회문제 해소가 아닌 단순히 '민간위탁 시설의 수'만을 감축하려는 경우, 외관상 민간위탁 개수는 감소하나, 인력의 감원 및 운영비용의 절감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이 현재와 대동소이할 경우에 성문화센터의 재구조화를 담은 본 동의안은 추진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 평생교육국이 사회문제 인식 및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해소 방안으로써 시설의 재구조화와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라 하겠음.

3)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신규위탁)을 통해 향후 3년간(2025.7.~2028.6.) 동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개인·전화·사이버·집단상담 등 상담사업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 부모·지역센터 등 상담자 교육사업
 -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시설규모** : 1997. 9. 19.
- **주요시설** : 1,516㎡(지상 6층·7층)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044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0백만원, 운영비 149백만원, 사업비 1,680백만원, 사업외 지출 77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의 기능과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로, 서울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인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청소년센터와 상담복지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상담 전공 석사 이상 및 전문자격증 소지) 및 경험(청소년 상담사·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관련 경력)이 요구되는 사무로, 각 자치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자치구 위임도 어려운 상황이며, 직영 또는 용역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단점(공공성 저하, 전문성이 미흡할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상담과 지원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청소년의 이슈 발생시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은 한국청소년육성회로, 본 센터의 개관(1997년) 시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본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단체 공모 시 1개 단체만 공모에 참가하였고,
 - 현 수탁단체(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청소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단체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바, 시설건립의 기여가 있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쟁이 상실된 상태에서,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간 시립시설을 위탁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2년 8개월 ('97.4.28.~'99.12.31.)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2차위탁	4년 6개월 ('00.1.1.~'04.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3차위탁	3년 ('04.7.1.~'07.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4차위탁	3년 ('07.7.1.~'1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5차위탁	3년 ('10.7.1.~'13.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6차위탁	2년 ('13.7.1.~'15.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 계 약
7차위탁	3년 ('15.7.1.~'18.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8차위탁	2년 ('18.7.1.~'2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 계 약
9차위탁	3년 ('20.7.1.~'23.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10차위탁	2년 ('23.7.1.~'25.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 계 약

- 상담복지센터는 크게 상담, 심리적 외상지원, 고위기 청소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대면,전화, 사이버, 맞춤형 등) 실적 〉

(2024.11. 기준)

상담심리지원 등 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청소년 동반자	긴급구조	일시보호
49,371건	1,455건	40,025건	6,540건	10,064건	1,098명	1,985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긴급구조 및 심리적외상지원 실적 〉

(2024.11.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긴급대응체계운영	4,769건	2,244건	2,571건

- 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변화(코로나로 인한 개인화, 디지털화, 비대면화의 가속 등)로 청소년 상담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상담 대기 시간이 증가하였고, 상담 대기 시간의 증가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무조치·무지원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립상담복지센터 및 자치구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를 증원하고 각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2021년 7월)한바 있음.
- 근래의 청소년 상담 증가는 시·자치구 상담복지센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개별적이며 맞춤 상담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낮아지는 상담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상담 증가)에 따른 대응은 서울시 재원을 투입한 상담사 증원에 그치고 있고, 수탁법인은 변화한 여건에 따라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개선없이, 종사원(특히,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 긴급구조,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담사)에게 사명감, 책임감 등을 독려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 신규 수탁법인 선정시 현 수탁법인이 간과하고 있는 효율적 조직과 인력 구성 등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단체 선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청소년 시설 시행규칙」) 제7조는 상담복지센터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복지센터는 조직과 정원은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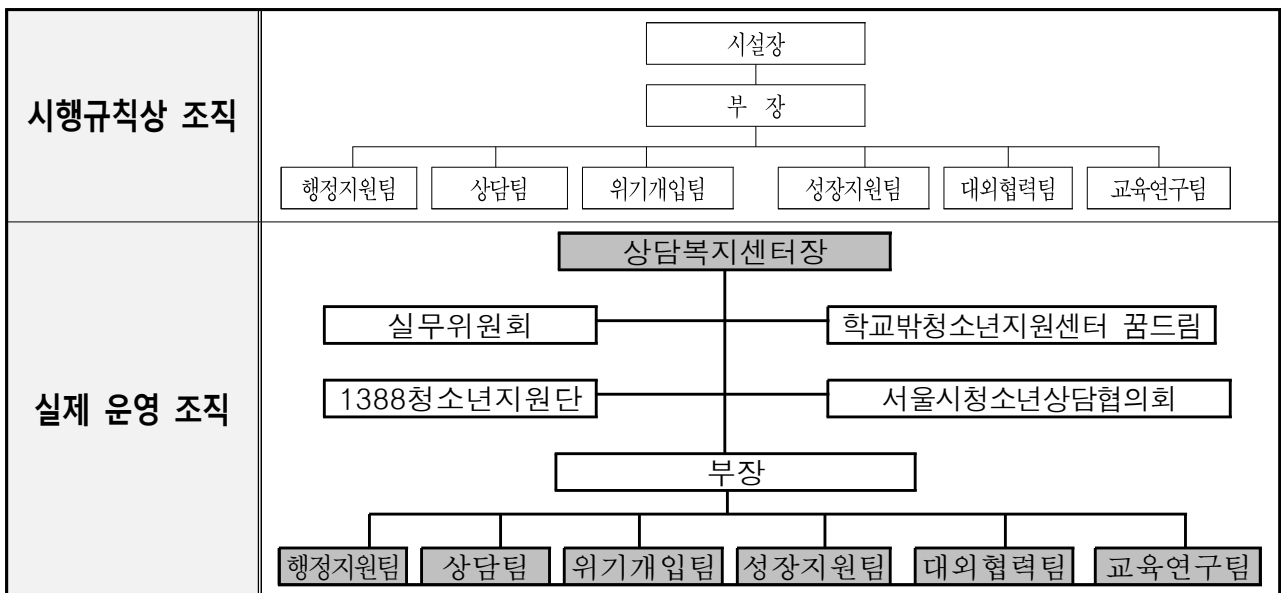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조직)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별표1과 같이 시설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보좌하는 부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팀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 조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청소년시설의 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2와 같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기준과 운영 조직 비교 〉



○ 상담복지센터의 하부조직은 시행규칙의 [별표1]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나, 개원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기능(꿈드림, 1388 등)을 조직에 반영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로 추가된 역할(SNS 활용 사이버상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상담, 1388유선전화상담, 일시보호 상담, 긴급구조 등)을 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46명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원기준과 현원 비교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비정규직	합계	비고
2001년 기준 정원	1	1	2	4	9	5	-	22	
2025년 현재 정원	1	1	2	4	9	5	-	22	
현원	1	1	1	4	9	6	46	68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연혁 발췌 및 재구성

-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조직 형태와 정원에 반영되어야 하나, 청소년 시설의 조직과 정원을 규율하는 「청소년시설 시행규칙」은 타법개정으로만 개정되었으며,
 - 조직형태를 규율하는 [별표1]은 2006년 이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은 없었으며, 정원을 규정하는 [별표2]는 상담복지센터의 정원은 2001년 이후 변경없이 22명으로 유지(2007년, 2008년, 2016년 신규 설치한 타 청소년시설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고,
 - 코로나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사를 대규모로 확충 및 역할 확대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상담복지센터의 정원을 고정(「청소년시설 시행규칙」 미개정)하여 상담복지센터는 정규직(22명)의 2배 이상의 인력(46명)을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기형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에 평생교육국의 무관심이 더 큰 위협요인으로 사료되는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상담복지센터 내 ‘꿈드림’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중복이 있어,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권고에 대한 조치 없이 두 기관을 현상 유지하여 재원낭비, 서비스 중복, 역량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중복 기관의 협력강화, 역할분담 또는 정보공유, 상호 평가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능의 유사·중복을 시너지 효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요구됨에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평생교육국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의 권고 미이행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감사를 의뢰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기능이 중복된 기관들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심의일자 : 2023년 제2차 위원회 (23년 3월)
- 심의결과 : 적정(권고)
- 권고/조건/보류사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꿈드림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 중복에 따른 시·자치구 전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필요

- 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 청소년 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사업을 강요하여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지속 추가되고 있고,
-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보다 더 분화된 청소년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상담시설 간 체계성과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청소년상담시설 간 사무분장 또는 공공서비스 공급구조(조직, 정원, 상담시설 간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의 개편은 없었는바, 효과적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청소년상담시설 간 체계화 또는 재구조화는 절실하다고 하겠음.

-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업무의 지속 증가에도, 증원은 없는 비효율적 체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동일·유사한 청소년시설을 중복적으로 설치하여, 청소년 상담시설 간 책임 회피하는 문화가 고착될 경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상담복지센터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조직 문화의 쇄신 등을 통한 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나,
 - 현 위탁기관(한국청소년육성회)이 시설 효율화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설(서울청소년센터 건물)의 건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위기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활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쇄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만료(2025.6.30.)되어, 공개모집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2025.7.1.~2028.6.30.) 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
- **위탁사무**
 - 국내·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보호사업
 -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
- **제3자 재위탁** : 해당
 - 필요성 : 유스호스텔의 운영 중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
 - 제3자 재위탁 중(예정)인 사무 : 2건
 -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현 계약기간 : 2023.7.1.~2025.6.30.)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기관일자** : 2011.3.28.
- **시설규모** : 부지 1,597㎡ / 건물 9,807㎡
- **주요시설** : 객실(95실), 회의실(6실), 편의시설(요리실, 카페, 레스토랑, 세탁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160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530백만원, 운영비 1,861백만원, 사업비 338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본 유스호스텔의 위탁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등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수행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여행자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환대*(Hospitality) 뿐만 아니라 재정·회계, 숙박시설 관리·운영 및 마케팅·홍보 등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 특히,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하 '본 유스호스텔')의 경우, 여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의 활동·교류 등과 관련된 전문성 등도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환대 →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 손님이나 방문객에게 환대, 친절, 편안함,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이는 여행,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접객산업에서는 중요한 요소.

-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은 총 2개소가 있으며, 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에게 숙박시설 제공 및 시설대관(회의실), 목적사업(여행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등을 위해 총 22명이 근무하고,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음.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4	24	1	1	1	3	5	9	1	3	-	-	-	-
현원	22	22	1	0	1	4	3	7	2	4	-	-	-	-

〈 최근 3년간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운영성과 〉

(단위: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달성	달성률	계획	달성	달성률	계획	달성	달성률
소계	123,242	133,068	107.9%	164,425	154,975	94%	155,646	156,234	100.3%
시설대관	118,700	127,687	107.5%	159,870	147,140	92%	150,028	147,016	98%
기타사업	412	998	242.2%	400	1,179	294%	400	360	90%
목적사업	4,130	4,383	106.1%	4,155	6,656	160.1%	5,218	8,858	169.7%

〈 시립 유스호스텔 현황 〉

시설별	소재지	규모(m ²)		수탁법인	개관일	최초 위탁일 (위탁 기간)
		부지	건물			
서울 유스호스텔	중구 퇴계로26	17,223	6,483	(사)한국스카우트연맹 (‘20.01.01)	’06.2.23.	2006.2.23 (‘25.1.1.~’27.12.31.)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영등포구 영신로 200	1,597	9,807	(사)한국청소년연맹 (‘09.11.12)	’11.03.28	2010.7.1 (‘23.7.1~’25.6.30)

- 2010년 개관 이후 25년간 사단법인 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시립청소년시설을 특정 청소년단체에게 장기위탁하는 것은 시립시설이 민간단체에 부속 시설화되거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위탁사무 수행능력의 저하 또는 청소년 사업의 축소, 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10.07.01.~2013.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3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5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 평생교육국은 시립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청소년단체의 장기수탁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활동시설 뿐만 아니라 보호·복지 시설 등에서도 장기수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 장기수탁을 허용하는 평생교육국은 신생 청소년단체의 자생환경 훼손, 중견 청소년단체의 시립시설 수탁 차단 등 민간위탁의 필수 조건인 ‘민간 단체 간 경쟁’을 제약하여 거대 청소년단체들이 시립시설을 독점하기 쉬운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본 동의안에 ‘제3자 위탁’을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제3자 위탁의 대상은 카페와 식당의 운영임.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내 제3자 위탁 현황 >

(단위:m²)

단체명	사용목적	면적(m ²)	임대기간	임대료
파***뜨	카페운영	277.2	2023.07.01.~2025.06.30	순매출액 대비 8.5%
식당제***앤비(주)	식당운영	304.01	2023.07.01.~2025.06.30	매출총액의 10%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내 제3자 위탁 계획 >

추진단위(항목)	기 간	세 부 내 용
사업준비	1월	○ 2025 연간사업 계획(안) 수립
사업운영	연중	○ 식당/카페 위탁 운영 월별 식단 구성,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매출분석, 마케팅전략 수립 숙박/대관 연계 패키지상품 개발
	5~6월	○ 식당/카페 위탁 운영 입찰 상반기 계약만료에 따른 입찰 추진(~6.30) 협상대상자 선정, 위탁 계약체결, 운영(7.1~)
종합평가	12월	○ 연간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시설 현황 〉

시설명	용 도
객실	-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편안한 쉼을 위한 숙박시설 (95객실, 330명 수용/ 스탠다드룸, 유스룸, 패밀리룸)
회의실	- 국제회의, 워크숍,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회의실 (6개실/ 대강당1, 대회의실1, 중회의실2, 소회의실3)
레스토랑	- 객실 및 세미나실 이용객을 위한 식당
카페	- 국내·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베이커리, 음료와 브런치 제공 편의시설
요리실(공동주방)	- 국내·외 여행객을 위한 공동주방으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거나 문화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편의시설
기타 편의시설	- 휴게실, 세탁실, 의무실, 대화정보실(PC), 지도자실, 공용샤워실, 동아리회의실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핵심적이지 않는 사무(시설 보수 및 청소 등)는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위탁은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

- 본 제3자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본 유스호스텔의 시설과 기능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부수적 사업(핵심적이지 않는 사무)으로 보고 이를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은 모두 수익시설로, 민간위탁은 책임과 권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성 및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본 유스호스텔의 수탁기관과 제3자 수탁기관 간 이익충돌로 인한 공공이익의 저하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제3자 위탁의 필요성,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독립채산제** : 단일기업, 공기업, 기업 내의 사업부에서 재정적 관점과 자금적 관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소유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경영단위로 스스로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관리제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현 수탁기관은 2024년 운영평가(2023.1.~12. 운영성과 평가)에서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한 가동률 상향,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충당예치금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신규 수탁기관 선정시 위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의 선정기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개선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 성북청소년센터(이하 ‘성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운영할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9
- **개관일자** : 2002.9.1.
- **시설규모** : 부지 2,679㎡ / 건물 5,726㎡
- **주요시설** : 수영장, 스터디카페, 청소년아지트, 드론축구장, 디지털하이브리드 U-스페이스, 세미나실, 다목적활동장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193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73백만원, 운영비 641백만원, 사업비 2,185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4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진흥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는 2002년 개관하여 2020년부터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대학교')에 위탁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시설로, 34명(정규직 20명, 계약직 14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41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 22개 사업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02.09.01.~2005.07.31.)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05.08.01.~2008.07.31.)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3차 위탁	3년(2008.08.01.~2010.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4차 위탁	2년(2010.07.01.~2013.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5차 위탁	3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6차 위탁	2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공개모집
7차 위탁	3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재계약
8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공개모집
9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재계약

〈 성북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총계	일반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	-	-
현원	34	20	1	0	1	1	4	6	6	1	-	14	10	4

〈 성북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4,193,400	100%	4,290,015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811,285	43%	1,901,900	44%
		민간위탁사업비	555,000	13%	555,000	13%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	-	-	-
		구비보조금	-	-	-	-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805,343	43%	1,805,343	42%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5,000	1%	5,000	-
		예수금	10,020		10,020	-
		기타잡수입	6,752		6,752	-
계	4,193,400	100%	4,290,015		100%	
세출예산	인건비	1,273,554	30%	1,369,227	32%	
	운영비	641,056	15%	642,000	15%	
	사업비	2,184,824	52%	2,184,824	51%	
	사업외지출	10,000	3%	10,000	2%	
	예비비	30,000		30,000		
	지난년도지출	53,164		53,164		
	반환금	800		800		
	일반관리비	-	-	-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 2025년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중 발체 〉

(단위 : 명, 천원)

구분/사업/프로그램	내용	계획인원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7분야, 22사업, 60프로그램	358,396	2,522,818	1,585,824
시설이용	3개 사업 4개 프로그램	3,275	12,710	0
시설대관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3,200	10,200	0
회원편의시설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2,160	0
생활체육시설사용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75	350	0
교육문화사업	1개 사업 5개 프로그램	105,488	730,482	439,650
생활체육사업	1개 사업 6개 프로그램	103,152	853,271	271,648
목적사업	7개 사업 22개 프로그램	113,740	308,430	270,420

청소년중심활동	1개 사업 4개 프로그램	4,120	180	10,800
진로활동	1개 사업 7개 프로그램	2,030	38,250	23,720
인증활동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90	750	1,250
지역연계활동	1개사업 2개 프로그램	30,000	0	4,400
청소년전용시간제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75,500	214,000	202,000
데이터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2,000	0	13,950
특화사업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0	55,250	14,300
상담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651	60,370	63,831
기타사업	1개 사업 4개 프로그램	0	40,080	22,800
민간위탁사업	8개 사업 17개 프로그램	31,090	517,475	517,475
방과후아카데미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13,800	257,174	257,174
청소년배치지도자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25,584	25,584
찾아가는청소년센터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2,000	11,657	11,657
유스데이	1개 사업 6개 프로그램	2,140	11,103	11,103
특성화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1,400	56,750	56,750
청소년코디네이터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40,007	40,007
수상안전요원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0	55,200	55,200
기타보조사업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1,750	60,000	60,000

-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의 성과를 2024년 3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현재의 성북청소년센터를 본 평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의회가 본 동의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은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성북청소년센터 운영평가(2023년)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주)가치경영원]
- 평가기간 : 2023년도(실시기간 2024.3.~8.)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91.19점(100점 만점)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는 성북청소년센터 평가에서 3가지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퇴사 관련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 성과보고서 중 개선요청사항 >

개선요청 사항

- 수탁사업 담당자 변경 14건 중 12건의 사유가 퇴사로 확인됨.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만족도 제고 활동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함
- 평가년도 전체예산 집행률은 82.91%로 저조하며, 분기별 집행률의 경우 1분기 60.68%, 2분기 66.61%, 3분기 103.84%, 4분기 100.58%로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집행률은 87.14%로 연간 사업비 집행률 상승 노력이 요구됨. 1분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청소년정책과는 ‘계약직 직원의 퇴사’로 인해 이직율이 높다고 답변하고 있음.
 -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수행해야 하고,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수탁법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계약직 직원에게 책임으로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 후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북 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 대부분을 단기 계약직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목적은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단기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 평생교육국이 단기인력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과도한 단기인력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합리적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

< 000 위원 >

-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직이나 퇴사가 많고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책이 있으신지.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정현원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 이고요. 이직률이 높은 거는 청소년센터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다 보면 계약직 직원을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뽑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직률이 생기고, 또 민간 업장이다 보니까 재단이나 이런 안전한 직장에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연차 같은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소관부서[청소년정책과]>

-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재단이직이 있고 개인적 사유가 좀 많긴 합니다. 새로운 일터로 옮겨가기도 하고. 제일 많은 건 개인사유입니다.

- 자립형 시설인 성북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0명(행정인력 포함)만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직은 14명(계약직10명, 촉탁직 4명)으로, 계약직의 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형 시설의 경우 더 많은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과도한 이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사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사무의 전체 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자 위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다시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동의안과 같이 제출된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경우 수탁사무의 일부(식당운영, 카페운영 등)를 제3자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성북청소년센터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전체 또는 대부분을 내부직원(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강사를 선발하여 전담 하게 하고 있음.

○ 성북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는 2025년 채용관련 공고가 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4건은 최종합격 공고로, 최종합격자는 총 44명에 달하나, 이는 정·현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보이고,

- 청소년활동 중 중요 프로그램인 교육문화사업 등을 외부 인력(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겠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사료됨.

※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최종합격자 수 : 44명

· 2025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동행캠프) 강사 최종 합격자 : 7명

·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최종 합격자 : 29명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 4명

· 2025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수학,영어,AI) 최종 합격자 안내 : 4명

- 평생교육국은 직원 외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 것이 제3자 위탁인지 용역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의 책임하에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도 않으며, 법률 규정(「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위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입(지도·점검 및 관리·감독)도 없이 방관하는 것으로 보여,
 - 평생교육국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다수의 민간위탁 시설을 손쉽게 운영하려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수의 강사를 활용하는 성북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기관의 책임성 또는 전문성 등은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평생교육국도 이를 방관하여 본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을 직영(평생교육국이 자격 있는 자와 프로그램별, 사업별 위수탁계약 추진 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성북청소년센터 누리집의 채용관련 게시글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 및 학교연계 강사 서류합격 및 면접보고	관리자	25.02.14	146
53	2025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수학,영어,AI)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24	137
52	2025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서류 심사 합격자 및 면접 일정 안내(수학,영어,AI)	관리자	25.01.22	143
5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20	173
50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강사 서류합격 및 면접보고	관리자	25.01.17	162
49	2025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수학, 영어, AI 부분)모집	관리자	25.01.14	213
48	2025년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 강사 모집	관리자	25.01.10	1,234
47	2025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문체험활동)강사 모집 공고	관리자	25.01.08	396
46	2025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동행캠프) 강사 최종 합격자 안내	관리자	25.01.08	150
45	2025년 성북청소년센터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최종 합격자 명단	관리자	25.01.07	205

6)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울 청소년센터(이하 ‘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 11. 11.
- **시설규모** : 부지 985㎡ / 건물 6,911㎡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지식·정보화 등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 교류,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중구 소재 서울청소년센터는 도심부 위치, 교통 편리 등 접근성에 이점이 있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청소년센터는 1970년 개관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이하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시설로, 32명(정규직 11명, 계약직 21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7개 분야, 25개 사업, 1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1992.07.01.~199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1995.07.01.~1998.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3차 위탁	3년(1998.07.01.~2001.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01.07.01.~2004.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5차 위탁	3년(2004.07.01.~2007.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07.07.01.~2010.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7차 위탁	3년(2010.07.01.~2013.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9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10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11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12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 2024년 서울시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에서는 부서별 인력편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높은 이직률, 하반기에 집중된 예산집행, 성과의 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서울청소년센터의 활성화 정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짐.
- 이에 서울청소년센터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중구 내 청소년보다는 서울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이라는 기능은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서울청소년센터를 청소년활동시설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집중할 예정(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으로 밝히고 있으나, 기능전환(청소년센터→평생교육시설) 없이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보다 우선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관이 지역 내 청소년이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위주의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평생교육국이 아닌 위탁기관에서 내리는 상황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국의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청소년센터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중 운영계획 일부 발췌 〉

② 문제점

구분	내용
지역 여건	본 센터의 위치는 대한민국 주요 업무지구로, 주거지보다 기업,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재개발로 인해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참가 가능한 청소년 및 성인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③ 개선계획 (문제점과 1:1 대응되도록 기재)

구분	내용
지역 여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여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통해 서울시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하고, 특히 청소년 약자동행(장애, 위기 청소년) 정책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하고자 한다. 재개발 후 새롭게 유입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요 업무지구라는 지역여건을 타파 하고자 한다.

출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_서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 자료)

- ‘2025년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는 서울시 위탁사무 외 타 기관에서 수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7개 사업, 51개 프로그램에 달하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에는 서울시 민간위탁금만이 표기되고 있어, 정확한 수입·지출을 기재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25년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중 발췌 〉

(단위 : 명, 천원)

구분	내 용	계획인원 (명)	소요예산	
			수입	지출
합 계 : 7개 분야, 25개 사업, 160개 프로그램		305,085	1,092,065	1,122,790
교육문화	1개 사업, 8개 그로그램	766	35,490	18,115
생활체육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1,824	153,300	74,994
목적사업	11개 사업, 67개 프로그램	84,546	339,305	344,205
자본형성(기능보강 등)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	-	23,595
보조금	2개 사업, 18개 프로그램	8,507	-	128,000
민간위탁	7개 사업, 51개 프로그램	169,102	-	395,839
기타	1개 사업, 10개 프로그램	40,340	563,970	138,042

〈 서울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2,939,792	100.0%	3,058,481	10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446,583	49.2%	1,503,717	49.2%
		민간위탁사업비	23,595	0.8%	50,000	1.6%
	보조금	국비보조금	128,000	4.4%	131,840	4.3%
	사업수입	시설사용료수입	375,000	12.8%	386,250	12.6%
		시설이용료수입	188,970	6.4%	194,639	6.4%
		사업별수입	528,095	18.0%	543,938	17.8%
	사업외수입	이월금	0	0.0%	0	0.0%
		예수금 및차입금	165,000	5.6%	165,000	5.4%
		이자수입	549	0.0%	800	0.0%
		기타수입	84,000	2.9%	84,000	2.7%
	세출예산	계	2,939,792	100.0%	3,058,481	100.0%
인건비		1,105,576	37.6%	1,138,743	37.2%	
운영비		513,366	17.5%	570,742	18.7%	
사업비		1,122,790	38.2%	1,150,346	37.6%	
사업외지출		165,000	5.6%	165,000	5.4%	
예비비		30,000	1.0%	30,590	1.0%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	-	-	-	
일반관리비		60	-	60	-	
이윤		-	-	-	-	
부가가치세		3,000	0.1%	3,000	0.1%	

- 서울청소년센터는 정원이 27명임에도 불구하고, 11명만을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21명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등 기형적인 인력운용이 지속하고 있으며, 센터의 조직구성도 「청소년시설 시행규칙」의 규정한 바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서울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총계	일반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7	22	1	1	0	3	4	7	6	3	2	-	-	-
현원	32	11	0	1	1	2	2	2	1	2	0	21	19	2

-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조직구성과 인력 운용의 이유가 주변 인구 감소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출 대비 적은 수입’에 기인하여 수익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서울청소년센터가 중구 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집중하지 않고, 광역 단위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적·환경적 여건이 원인인지, 자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업에 집중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평가와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청소년센터를 33년간 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육성회의 본부는 서울청소년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 서울청소년센터 건물 6층과 7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서울청소년센터는 서울시의 시설이 아닌 한국청소년육성회의 종속화 및 부속화된 시설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청소년센터와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관계

- 서울청소년센터는 대한민국 1호 청소년시설로,
- 1964년 설치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에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발의(1965년)하여,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 서울청소년수련관건립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의 전신) 구성하였음.
- 서울청소년센터는 1970년 ‘중앙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하였음.
-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는 1973년 동 회관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음.

- 한국청소년육성회의 전신인 단체(서울청소년수련관 건립위원회)가 서울청소년 센터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단체라고는 하나,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에 본 건물을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했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서울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왔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28년간 수탁받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동그라미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운영과정 : 국어, 영어, 수학 등, 제과제빵, 바리스타, 슈가아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에서 신뢰성 있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위탁사무 외 사업을 본 센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수탁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또는 지원의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점,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에 속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가 직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서울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차용하여 시립시설 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7)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이하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개관일자** : 2005. 6. 1.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827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사업, 교육문화사업, 상담·보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활동시설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서북권에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축이고 9개 대학이 있는 자치구로 신촌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정주 또는 직주근접 여건이 갖춰진 자치구임.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2005년 개관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없이 20년간 사단 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하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시설로, 28명(정규직 17명, 계약직 11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15억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13개 사업,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05.06.01.~2008.05.31.)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08.06.01.~2010.07.31.)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3차 위탁	3년(2010.08.01.~2013.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5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1.1.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2	4	8	6	3	2	-	-	-
현원	28	17	1	-	1	-	3	8	4	-	-	11	5	6

〈 2025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단위:천원)

	내용	계획인원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계	107개 프로그램	543,115	3,277,739	1,893,442
I.시설이용료수입	3개 프로그램	34,120	182,406	0
1. 시설이용료수입	3개 프로그램	34,120	180,256	-
II.교육문화사업	9개 프로그램	38,710	243,120	121,850
2. 정규강좌	5개 프로그램	34,080	243,120	110,790
3. 교육문화운영사업	4개 프로그램	4,630	-	11,060
III.생활체육사업	6개 프로그램	157,824	1,400,328	747,873
4. 정규강좌	4개 프로그램	157,824	1,400,328	484,056
5. 생활체육운영	2개 프로그램	-	-	263,817
IV.청소년목적사업	54개 프로그램	271,060	1,053,765	623,450
6. 청소년자치기구	10개 프로그램	19,010	173,640	79,180
7. 지역연계사업	14개 프로그램	64,240	30,920	40,620
8. 청소년참여활동	14개 프로그램	6,810	6,200	22,750
9. 청소년전용공간운영	2개 프로그램	20,600	-	4,700
10. 동네학교(교육문화)	8개 프로그램	75,680	639,325	351,388
11. 동네학교(생활체육)	6개 프로그램	84,720	203,680	124,812
V.특별지원	35개 프로그램	41,401	400,269	400,269
12. 특별사업	29개 프로그램	27,688	233,975	233,975
13. 기타민간위탁금	6개 프로그램	13,713	166,294	166,294

〈 최근 3년간 서대문청소년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총계	위탁운영비	기능보강비	기타사업
2024	1,361,976	659,707	198,658	503,611
2023	1,331,184	762,552	262,780	305,852
2022	1,232,284	712,500	266,895	252,889

〈 2025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4,930,000	100%	5,050,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308,539	27%	1,330,953	26%
		민간위탁사업비	200,000	4%	200,000	4%
	보조금	국비보조금	122,844	2%	122,844	2%
		시비보조금	-			
		구비보조금	45,450	1%	45,450	4%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91,106	4%	195,883	4%
		사업별수입	2,615,255	53%	2,697,138	53%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20,641		20,641	0%
		기타잡수입	426,165	9%	437,091	9%
세출예산	계	4,930,000	100%	5,050,000	100%	
	인건비	1,297,817	26%	1,330,110	26%	
	운영비	840,499	17%	867,352	17%	
	사업비	1,906,199	39%	1,944,918	39%	
	민간위탁사업비	401,984	8%	412,034	8%	
	사업외지출	425,403	9%	436,037	9%	
	예비비	17,169		17,598		
	지난년도지출	-	-		-	
	반환금	-	-		-	
	일반관리비	500		512		
	이윤	-	-		-	
	부가가치세	40,429	1%	41,439	1%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조직편제, 높은 이직률, 예산의 연말집행 집중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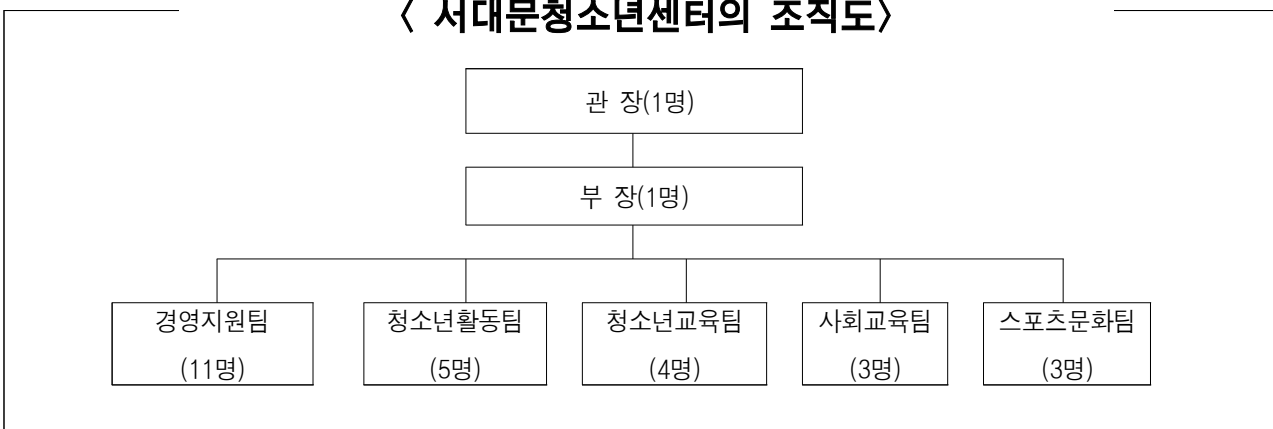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기관 현원 대비 세분화된 조직인원 편제(사회교육 2명, 스포츠문화 2명)의 효율화 방안 검토 등 경영시스템 안정화 노력 강화가 요구됨
- 평가년도 기준 정규직 27명 중 9명의 이직이 발생하여, 이직 시 면담을 통한 제도 개선 환류 및 신입직원 업무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구체화·현행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분기별 전체예산 예산집행 실적의 경우 1분기 74.53%, 2분기 77.31%, 3분기 97.10%, 4분기의 경우 예산 편성 누락 대비 집행액 발생으로, 분기별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2023년 전체 예산액 대비 1분기 60.34%, 2분기 80.71%, 3분기 105.04%, 4분기 136.26%의 집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이 주로 재무·회계 분야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지적사항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시행이 필수적임.

- 2025년 2월 기준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 5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중 사회교육팀은 도예, 피아노, 수학, 성인영어 회화, 파닉스(phonics, 영어 읽기·쓰기 교육), 가족공예 강사과정반 등 총 61개를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문화팀은 수영, 헬스, 스피닝, 줌바, 재즈, 라인댄스 등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도상 사회교육팀과 스포츠문화팀은 총 6명(팀장 2명 포함)이나, 육아 휴직자도 1명 포함하고 있어, 총 5명의 인원이 9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인력배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운영비 충당 등을 위한 강사 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공공성 및 효과성 부분에서 평생교육국이 너무 낮은 수준의 지도·점검의 수준을 유지하여, 서울시도, 수탁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강사 활용 사업추진이 보편화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민간위탁 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생교육국의 대책 마련이 우선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조직도 >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청소년활동 중 연중 추진하는 사업은 단 3개(줍깅, 안산 생물탐사, 세계시민교육) 뿐이며, 3개 중 2개는 한시적 사업으로, 청소년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보임.
- 청소년활동으로 분류된 프로그램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 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활동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대문청소년센터 누리집 중 청소년활동 중 일부 발체 〉

청소년활동

시립청소년센터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기후변화	독립역사	미디어
요리	축제	진로



2024 청년창업지원프로젝트 <커피스쿨> 참가자 모집

- 대상** 바리스타, 카페 창업을 꿈꾸는 19~24세 청년
- 기간** 2024.10.5.(토)~12.7.(토)
- 내용** 바리스타, 카페 창업을 꿈꾸는 19~24세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창업지원프로젝트
- 문의** 070-4550-6713



안산플레이 에코티어링

- 대상** 초등 & 가족
- 기간** 연중
- 내용** 안산 생물다양성 탐사 및 미션 수행 프로젝트
- 문의** 070-4550-6721

- 청소년활동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 프로젝트<커피스쿨>, 요리 축제<남남축제>, 비빔밥나눔<비벼樂>, 서대문<힘차밥차> 등 외관상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구분해야 할 사업들이 청소년활동으로 게시되고 있음.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고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또는 성인, 지역주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구성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의 전용성보다 지역 기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인사, 구비서류, 절차 미이행 등 시설 운영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2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 시 적출사항이 회계·인사, 사업추진 절차에 한정되는 이유가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회계·인사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낮은 수위의 지도·점검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일일결산 미흡	조치 완료
	매입세액공제액 회계처리 미흡	조치 완료
	경력산정 시 전력조회 실시 미흡	조치 완료
	휴직자에 대한 승진 및 승급 제외 규정	조치 완료
2023년	예수금 통장 관리 미흡	조치 완료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2024년	계약 절차 미준수 및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복무관리 (사전결재·근태관리) 미흡	조치 완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내용 미흡	조치 완료

-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음.

8)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이하 '광진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
- **시설규모** : 부지 2,081㎡ / 건물 5,632㎡
- **개관일자** : 2006. 6. 8.
- **주요시설** : 대극장, 천문특화시설(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등), 강의실, 청소년전용 공간, 다목적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008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071백만원, 운영비 446백만원, 사업비 1,394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9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광진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사업, 교육문화사업, 상담·보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활동시설로, 청소년의 취미활동과 자아 성장을 위한 인성과 천문과학, 진로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시설로,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관련 수탁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있음.

※ 광진청소년센터는 강동·송파와 인접해 있으며,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광진교 등 도로교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간선버스, 지선버스노선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은 주거지역 생태공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광진청소년센터는 2006년 개관하여, 2010년부터 16년간 사단법인 흥사단 (이하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시설로, 29명 (정규직 19명, 계약직 10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30억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46개 사업, 2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광진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06.04.17.~2009.04.16.)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09.04.17.~2010.07.31.)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계약
3차 위탁	3년(2010.08.01.~2013.06.30.)	(사)흥사단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흥사단	재계약
5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흥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흥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흥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흥사단	재계약

〈 광진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1.1.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7	27	1	1	1	3	4	8	7	1	1	-	-	-
현원	29	19	1	-	1	2	3	11	1	-	-	10	7	3

〈 광진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5개 분야, 46개 사업, 201개 프로그램	
1	업무지원사업	대관사업, 이용자대표회, 지도지역량강화	8개 사업, 8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지정평생학습관 등	23개 사업, 115개 프로그램
3	청소년사업	청소년 참여, 역량강화, 지역연계 활동 등	11개 사업, 33개 프로그램
4	천문특성화사업	별빛산책, 단체별자리여행, 과학축제 등	1개 사업, 23개 프로그램
5	진로직업체험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의기적, 꿈꾸는아이들 등	3개 사업, 22개 프로그램

〈 2025년 광진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3,007,522	100%	3,064,665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376,955	46%	1,403,117	46%
		민간위탁사업비	89,000	3%	90,691	3%
	보조금	국비보조금	6,000	0%	6,114	0%
		시비보조금	0	0%	0	0%
		구비보조금	302,000	10%	307,738	10%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135,990	38%	1,157,574	38%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0	0%	0	0%
		이월금	31,527	1%	32,126	1%
기타잡수입		66,050	2%	67,305	2%	
세출예산	계		3,007,522	100%	3,064,665	100%
	인건비		1,071,352	36%	1,092,188	36%
	운영비		445,812	15%	454,070	15%
	사업비		1,393,704	46%	1,420,183	46%
	사업외지출		30,000	1%	30,000	1%
	예비비		7,032	0%	8,602	0%
	지난년도지출		25,102	1%	25,102	1%
	반환금		27,071	1%	27,071	1%
	일반관리비		1,449	0%	1,449	0%
	부가가치세		6,000	0%	6,000	0%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에서 이직률, 안전 사고, 교육환경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 연도별 이직인원 지속 발생(21년 5명, 22년 2명, 23년 2명)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직 시 면담 등을 통한 제도 개선 환류 및 신입직원 업무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구체화·현행화 노력이 요구
- 사업비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신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시도한 점은 우수하나, 이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인프라가 중요한 환경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치 노력이 있으며 내부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파함. 다만, 시민의 방문이 잦은 기관 특성 상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고객 대상 안전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2023년 기준 낙상사고 1회 발생)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결과는 이직률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이직률(일정기간 퇴사한 직원 수를 전체 직원 수로 나눈 비율)은 내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높은 이직률은 센터 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이 이전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과 숙련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퇴사하는 직원의 지식과 노하우는 소멸됨에도, 퇴사하는 직원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존직원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결국 시설의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직문화는 인재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바,

- 광진청소년센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높은 이직률에 대해 평생교육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광진청소년센터는 2025년에도 총 2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센터를 청소년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제2조) 및 특정(제10조)할 뿐만 아니라 시설 사용에 우선권(제31조)을 청소년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광진청소년센터가 계획한 청소년활동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청소년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청소년지도자 실습 등)을 나열한 것이며,

- 청소년활동 중 ‘자기개발활동(전환기 청소년프로그램)’은 단 1개 사업으로 중3과 고3을 대상으로 11월~12월에만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 청소년활동 중 ‘아웃도어&캠프(청소년 숲길 트레킹)’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6월 중에만 실시하는 한시적 프로그램 1개만 운영하고 있음.

〈 광진청소년센터의 ‘청소년활동’ 중 청소년 대상 활동 현황 〉

청소년활동

자기개발활동

아웃도어&캠프

지역연계&축제

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실습

봉사활동

전환기청소년 프로그램

또 다른 배움터로 이동하는 전환기청소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전환기 청소년(중3 또는 고3)
기간	수능 종료 후 (11~12월 중)
활동장소	광진청소년센터 내 외

청소년 숲길 트레킹

광진둘레길을 테마로 도시와 자연을 넘나드는 청소년 트레킹을 진행합니다.

대상	14세~19세 청소년(중~고등) 20명
기간	6월 중
활동장소	광진둘레길, 아차산 일대(아차산생태공원)

출처 : 광진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발췌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등생 전용이며, 중·고등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평생교육국에 청소년센터를 청소년을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5년 2월 현재 광진청소년센터의 과학탐구정보화 프로그램 〉

과학탐구정보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반	요일	시간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내용	장소
창의 사고력 수학	2019년생 ~초4	A	수	16:00~16:50	월25,000원 (재료비 월3,000원)	교재 개별준비 : <창의사고력초등수학팩트 /출판사:매스티안> 7세-창의사고력키즈수학팩트 키즈 기본A 1학년 - Lv.1 기본A/2학년-Lv.2 기본A 3학년 - Lv.3 기본A 4~6학년 - Lv.4 기본A~Lv.6 기본A	2층 강의실1
		B		17:00~17:50			
	2019년생 ~초5	A	목	16:00~16:50			
		B		17:00~17:50			
2019년생 ~초6	A	토	13:00~13:50				
	B		14:00~14:50				
유아 꼬마과학자	2020년생~2019년생	A	목	15:00~15:50	월 30,000원 (재료비 월18,000원)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학탐구 프로그램	4층 미생물실
초등 꼬마과학자	초1~3	A		16:00~16:50	월 30,000원 (재료비 월18,000원)		
	초등	B		17:00~17:50	월 30,000원 (재료비 월18,000원)		

출처 : 광진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발췌

〈 2025년 2월 현재 광진청소년센터의 국제전문화 프로그램 〉

국제화, 전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반	요일	시간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내용	장소
Disney(디즈니) English World 이소연 선생님	2020년생 ~초등	A	월	15:00~15:50	월33,000원	디즈니 영어속 주인공은 나야나. 디즈니 영어와 함께 영어 말하기 실력 UP! 교재 개인구매: 디즈니 주니어 잉글리쉬 토이스토리4	4층 강의실4
American 드림 클래스 이소연 선생님	초3~6	A		16:00~16:50	월33,000원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으로 리더하기. 다채로운 주제로 어휘력과 독해력 UP! 교재 개인구매: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 EASY 2	
Native Phonics (파닉스) 크리스틴 선생님	2020년생 ~초3	Level2	월	16:10~16:50	월33,000원	교재 개인구매(Smart Phonics2 3rd Edition) student book+work book	4층 강의실5
		Level1		화		16:10~16:50	
Native English (영어회화) 크리스틴 선생님	2020년생 ~초3	Level2	월	17:00~17:40	월33,000원	교재 개인구매(Let's go Level 1 5th edition) student book+work book	
		Level1		화		17:00~17:40	

출처 : 광진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발췌

〈 2025년 2월 현재 광진청소년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반	요일	시간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내용	장소
캘리그래피 (취미반)	성인	A	월	10:00~11:50	월35,000원 (재료비 첫 구입시 50,000원)	내 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글귀! 종이와 붓으로 글씨를 표현해보는 캘리그래피 취미반 (캘리소품이나 작품완성 시 재료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2층 창작 배움터
손뜨개	성인	A	화	10:00~11:50	월25,000원 (재료비 별도)	코바늘, 대바늘뜨기 기초와 작품 제작 (작품에 따라 재료비 상이)	2층 강의실3
글씨의 품격 성인 바른글씨 쓰기	성인	A	수	12:00~12:50	월28,000원	깔끔하고 정돈된 글씨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멋진 글씨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인 바른글씨 쓰기 수업!	2층 강의실2
플로리스트 자격증 & 창업반	성인	A	수	10:00~11:50	월35,000원 (재료비 월120,000원)	취미로 시작해서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이론 수업과 실기 위주로 수업 진행	2층 창작 배움터
보타니컬꽃그림	성인	A	목	10:00~11:50	월45,000원	준비물 : 8절스케치북, 연필(2H, HB, 2B), 연필깎이, 지우개 교재 개별준비 : 꽃그림 작품으로 배우는 보타니컬아트_미진사	

출처 : 광진청소년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발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탁기관은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준비한 결과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진청소년센터는 2024년도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신청률 등에서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90.4점)를 얻었는바, 청소년시설 평가에 있어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이라는 특징을 감안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 인구의 감소, 기술의 발달(디지털화)로 인한 개인주의 강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건 변화에 맞춰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의 요구 또는 필요사항 보다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대해 깊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여부를 동의하기 전 ‘청소년시설의 전용성 강화’와 ‘지역 주민의 편익’ 사이에서 한 가지 가치를 우선할지 또는 두 가치의 균형을 고려할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현중
------	-----	-------	-----